

21세기를 향한 도서관정책

최 달 현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차 례

- 1. 머리말
- 2. 정보화사회와 도서관
- 3. 도서관정책
- 4. 각국의 도서관정책
- 5. 한국의 도서관정책
- 6. 21세기를 향한 도서관정책

1. 머리말

1991년은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전환기로 기록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서관진흥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도서관인들이 즐기차게 외쳤던 숙원과제들의 많은 부분이 동 법률에 반영되었고 또한 도서관 행정을 문화부로 이관시켜 도서관을 국민생활의 지적·문화적 종합공간으로 만듦과 동시에 국가발전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4월에는 국립중앙극장에서 우리 도서관 역사상 유례없는 많은 도서관인들이 새로운 도서관의 모습을 다듬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된 의지로써 굳게 집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금년에 들어와서 도서관 내외의 여러가지 움직임으로 보아서는 도서관은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것 같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급후 점진적으로 분명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대응을 요구해 올 것이고 이를 대비해서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충

분한 대책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할 과제는 크게 나누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서관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마련해야 할 정책적과제가 있고 또한 정책의 실현과정에 필요한 운영면의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운영면의 과제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서관쪽에서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서 앞서의 정책적과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21세기를 향한 도서관정책이란 대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것은 바로 미래 전개될 고도정보사회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도서관봉사를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으로서의 도서관정책에 대하여 고민하고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2. 정보화사회와 도서관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화사회라고 합니다. 이는 다니엘 벨 교수가 말하는 후기 산업사회로서, 농업화사회와 공업화사회가 농업생산과 공업생산이 각각 주체를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다양한 정보가 주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농업화사회 및 공업화사회에 있어서는 유형적인 재화와 에너지가 주체이고 무형적인 정보는 이들을 지탱하기 위한 종속물로 생각되었던 것이지만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지식이나 정보의 움직임에 따라서 재화의 움직임이나 사용방법이 결정됩니다. 이때문에 농업화사

회로부터 에너지혁명이 일어났다면 공업화사회로부터는 정보혁명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특징으로는 ①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따라서 컴퓨터의 사용이 큰 과제가 되고 있으며 ②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환경이나 출판형식 및 정보전달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③ 사회환경이나 인간의 욕구등이 다양화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이용자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④ 계다가 정보화사회에서는 '지구촌'이라고 표현되는바와 같이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로서 지구상의 모든 지식정보보다 전인류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보화사회의 이러한 특징들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단순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적인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지만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도서관은 인류가 기록이라는 형태로 축적해온 문화유산은 후세에 전함은 물론이려니와 고도의 전문적 지식·정보 활용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활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고속으로 발전·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그 사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됩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는 경쟁적가치 추구에만 급급하던 시대는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안정된 생활기반과 자유시간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연구·학습활동, 창작·예술활동, 자원활동, 종교활동, 여가선용활동 등)을 요구하게 되어 일찌기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이 누려왔던 문화창조의 일들이 널리 일반인에게 확대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이 종래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과학과 기술의 진전에 따른 자유시간의 증대와 소득의 상승, 의료개선과 영양의 향상으로 인한 인간 수명의 연장 등 때문에 그 활동기반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서관은 이러한 소위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봉사체제로 변화하지 않고는 정보화사회에서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21세기의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문화부를 신설하고 도서관행정을 문화정책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하여 이제 도서관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3. 도서관정책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면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활동은 국가정책의 구현화된 실현작용이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활동이나 기능수행의 기본방침이 정책인 것입니다.

현대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로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국가정책이 국민생활의 어떤 부분에도 침투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이 잘못 결정되거나 잘못 집행되고 평가되면 국민생활은 어려움을 면할수가 없으며 반대로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집행·평가는 국민생활의 미래를 밝게하고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수립의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목적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더불어 이의 실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및 이들을 뒷받침 할수 있는 관계법규의 정립 등 필요적절한 정책수단의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의 성공적추진을 어느정도 중시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권한이 크게 집중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대통령은 정책목표달성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여가 큰 관건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서관정책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적·문화적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수 있는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문화된 도서관관계 법규

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또한 실시과정을 정해 놓은 기본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정책은 전문적지식을 가진 도서관 관계자와 도서관봉사의 직접 수혜자인 이용자의 합작에 의해서 비로소 올바르게 수립되어지는 것입니다. 1979년과 1991년 두차례에 걸쳐 미국에서는 「도서관·정보봉사에 관한 백악관회의」를 개최, 3천명이 넘는 전국의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 「전국 정보정책의 연구·실시」와 「전국도서관법 제정의 책정」등 64개항의 정책결의를 한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클 뿐아니라 민주국가에서의 정책수립의 진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멋진 모델이라고 하였습니다.

4. 각국의 도서관정책

정보화사회는 지식·정보가 주체를 이루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도서관의 존재가치와 필요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일국의 발전은 그나라 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우리는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의 이와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부터 국가의 도서관정책에 관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예

미국은 1948년에 「도서관봉사를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한 이후 1951년에 과학기술정보국을 국립과학재단내에 설치하여 이를 기반으로 과학정보정책의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1956년에는 농촌지역주민에게 도서관봉사를 연장하기 위한 「도서관봉사법(LSA)」을, 그리고 1964년에 와서는 도서관 신축 및 개축을 위한 보조와 도서관 상호협력 지원 및 장애자와 수용자를 위한 봉사 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도서관봉사 및 건축법(LSCA)」을 제정하여 도서관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룩하였습니다. 같은 해 연방정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활동의 감독과 조정을 위해 연방과학기술정보교환소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1966년에 대통령 직속의 도서관심의위원회와 전국도서관자문위원회(NACL)가 구성되었고 동 위원회는 1970년에 도서관·정보과학전국위원회(NCLIS)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4명의 위원과 의회도서관장으로 구성되며 15명중 5명은 도서관 또는 정보과학전문가로 되어있고 그 기능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도서관 심의위원회의 기능수행을 보좌하고 강력한 국가 정보정책을 추진하며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대하여 도서관정책 입안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1979년과 1991년에는 폭발하는 정보량과 그의 전달을 위한 기술혁신이 크게 발전되고 있는 오늘날 앞으로 전체 미국인의 정보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전국적 규모로 토의를 일으키고 어떠한 정보라도 전국 어디에서든지 또 누구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도서관·정보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봉사에 관한 백악관회의(WHCLIS)를 10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주도하의 이러한 도서관정책 이외에도 미국은 의회에 상하양원 합동 도서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의회도서관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에 전국의 도서관발전계획 및 수행을 위한 연방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각 주정부에도 주정부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발전의 전국적인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 영국의 예

영국은 1950년초에 과학산업연구청이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대출도서관 설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1962년 국내적으로 과학기술의 중핵연구를 피하고 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국립과학기술대출도서관을 설립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을 제정하여 도서관정책을 국가의 시책으로 확고히 하는 등 도서관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서관법으로 평가 받고 있는 동법은 도서관정책기구의 강제 설치와 장관의 공동도서관 감독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때를 같이 하여 교육·과학부내에 있던 '도서관과'를 '국'단위로 승격시켜 전국의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영국국립도서관의 지위업무에 힘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상 직속 아래 공식적인 도서관 자문위원회와 산하에 각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의 기능강화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는 과학기술정보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국을 교육·과학부 산하에 신설하였고 1969년에 와서는 「국립도서관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1973년에는 대영박물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과학기술대출도서관 등을 통합하여 영국국립도서관으로 개편하였고 그속에 정부 부처간 과학기술정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도서관의 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3) 일본의 예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는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과학기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연구개발이나 정보활동은 미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일쇼크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맞이하면서 정보가 국가의 귀중한 자원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1956년에 와서는 과학기술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청을 설립하였고 1957년에 과학기술정보활동의 구심체가 되는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가 설립되었습니다. 1969년에 이르러서는 과학기술정보의 전국적 유통체제구축이 제안되고 또 대학,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등에 의해서 정보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청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센터, 전문센터 등의 역할부담과 정비작업이 추진되었고 문부성, 중소기업등의 기관차원에서 정보유통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서관정책의 검토에는 일본도서관협회의

활동과 각 정당이 갖는 도서관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도서관정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라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적절하고도 섬세한 도서관정책의 제시와 계획적인 도서관행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본의 각 정당은 이미 1970년에 현대사회에서의 도서관봉사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정당별 도서관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지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한국의 도서관정책

우리나라 도서관이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중요한 원인은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그동안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1963년에 처음으로 도서관법이 제정되어 국가적차원에서의 도서관정책은 표현되고 있으나 제정·공포된 이후 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급격한 사회적변화와 경제적 신장속에서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약 25년동안 적용되어온 동법의 낙후성과 후진성이라든지 도서관행정을 전담할 정부 부서가 건국후 반세기가 가까워오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없다는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행정의 부재를 단적으로 알수가 있는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벌써 1979년에 행정개혁위원회가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불분명하고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가행정체계의 제도화가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한바도 있습니다. 1963년의 도서관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서관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현한것으로는 의의가 있으나 그 내용이 임의행정(장려행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시책은 도서관설치주체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보조금행정의 차원을 넘는것은 아니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1987년에 이르러 도서관법의 혁신을 위한 도서관계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동법은 의원입법의 과정을 통하여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② 도서관진흥기금 설치·운영 ③ 국

가 및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의무화 ④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부담 ⑤ 도서관·정보협력망과 표준번호제도의 실시 ⑥ 조세감면 규정의 설치 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987년의 도서관법 개정은 그나마 우리나라 도서관행정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수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도서관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정은 여전히 뒤로 미룬채 문교부 사회교육제도과에서 다른 업무와 더불어 도서관행정업무를 분장해 왔을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서관행정업무가 문교부, 내무부, 문공부, 상공부, 과기처 등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도서관정책은 물론, 전국적인 정보유통관리체제의 확립은 불가능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1968년부터 몇차례에 걸쳐 전국의 시·군·구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 실시한 바 있으나 그로부터 20여년이 넘는 1990년 12월말 현재 전체의 268개 시·군·구 가운데 아직도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이 5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책은 세웠지만 집행은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그 정책은 존재한다는 것으로 상징적의의가 있고 처음부터 집행할 정책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갖게도 합니다. 무릇 어떠한 정책이든지 그 실사가 끝나면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와 효과를 평가하고 거기서 얻게된 정보와 교훈이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흡수되어 실패의 전처를 밟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남북의 대치로 안보제일주의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제일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시되어 왔고 또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정치제도와 의회의 권한위축에 따라서 권력이 집중화된 대통령의 정책의지의 결여, 그리고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요인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기는 합니다.

1990년 문화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스로전을 가지고 문화부가 독립하자 도서관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시대적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서관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금년 3월에 오늘의 도서관진흥법이 탄생

하게 되었습니다. 동법의 제정으로 도서관정책 및 도서관행정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문화부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로써 2000년대 문화복지와 정보화사회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공급 및 높은 수준의 문화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제1단계는 이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 진흥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① 도서관의 지역문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조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사서직화 ③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강화 등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6. 21세기를 향한 도서관정책

민주정치는 정치권력의 다원화를 통하여 책임의 분산을 불가피하게 하고 정치지도자의 순환은 장기적 종합적 시각에서의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목소리가 큰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가장래를 바라보며 종합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주도하려면 지식층이 이들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즉 분야마다 전문가들과 지도층이 끊임없이 정책문제를 진단·검토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21세기를 향한 도서관정책의 모색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한사람이라도 많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책정을 촉진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취지에서 21세기의 도서관봉사를 위해서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 몇가지를 제시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1) 대통령직속의 도서관정책자문기구 : 도서관정책자문기구는 도서관정책을 개발하고 조언하며 도서관협력망을 비롯한 문헌정보활동에 관련된 각급 부처와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미국의 NCLIS가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에도 1987년 도서관법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될 때까지 3년에 걸쳐 단 두차례의 위원회소집이 있었을뿐 아무런 성과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존재하여 왔습니다.

새로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에도 문화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는 지식·정보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과 도서관관련정책은 정부의 일부 부처에만 국한된 성격이 아닌 점을 감안할때 미국의 NCLIS와 같이 대통령직속의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임무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2) '국'단위의 도서관행정 전담부서 : 전담부서의 설치는 유네스코의 NATIS와 UNISIST의 계획요소에서 가장 우선적인 권고사항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서관계에서는 이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바 현재 문화부에서는 어문출판국내에 도서관정책과를 연달까지는 신설하도록 관계 부처간에 합의된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대량화,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증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문화적생활의 보편화등 정보화사회의 체현상에 부응하는 도서관봉사를 모든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부내에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처럼 '국'수준의 도서관행정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할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과'단위의 전담부서를 두어서 도서관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3) 문화부장관의 공공도서관봉사의 발전 촉진과 감독책임 : 영국의 1964년 도서관법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도서관봉사의 발전을 촉진하고 감독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서관기능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케할 책임

을 장관에게 부여하고 아울러 장관은 의회에 대하여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국민에 제공되는 도서관봉사에 대한 국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서는 장관의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조언기능은 밝히고 있지만 도서관행정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서관발전추진과 감독의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국가문헌정보유통관리체제의 확립과 도서관 상호협력의 조직 : 국민의 정보욕구의 다양화, 단말기를 통한 적정정보의 공급요구, 문헌정보의 국제적 이용화 등은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서관으로 하여금 도서관 자체업무의 전산화 전국적인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한 국가문헌정보유통체제(NATIS)의 확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장·단기계획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984년부터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문헌정보처리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software의 개발,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센터의 장서확충, 국립도서관의 기능강화 등, 선결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사회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하여야 할것이며 이는 곧 개별기관 또는 집단으로 투입하는 막대한 전산화경비를 절약하는 효과도 가지고 올것입니다.

(5) 도서관봉사의 질과 수준에 대한 기준설정 : 도서관을 설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일정수준 이상의 도서관봉사를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봉사라는것은 도서관자료의 제공은 물론, 독자에 대한 원조, 아동봉사, 참고봉사로 하고 하는 도서관봉사의 확대를 의미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자료는 무엇이든 제공한다고 하는 포괄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봉사라고 할때는 주민이 크게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자료에 접근

할수 있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그 규모가 어느정도 크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1964년법에는 인구 4만명 이하의 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도서관봉사를 경제적으로 제공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서관의 설치에만 힘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서관봉사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를 위한 기준을 법에서 명문화해야 될것입니다.

(6) 전문직에 의한 도서관운영 :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장은 1997년부터는 사서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학교도서관의 80% 이상이 일반교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사서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고 또 대학도서관장의 대부분도 비전문직교수의 보직으로 점유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도서관의 전문적업무의 실질적 관리책임자인 과장업무도 일반 행정직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봉사업무의 전문성을 전연 무시한 횡포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관중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도서관봉사업무는 전문직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제도적으로 혁신을 해야겠습니다.

(7) 사서직의 전문성제고와 자격의 상향조정 : 도서관봉사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진흥법이 모든 도서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아래 제정되었으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서직의 자질문제에 관계되는 자격기준에 있어서는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필요에 대응해야할 미래의 도서관업무가운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이를 감당할수 있는 자격의 소유자가 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서자격취득요건을 크게 강화하여 전문적업무는 대학원교육을 마친자가 담당토록 함이 바람직할것이나 적어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사서가 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다원화되고 있는 사서양성교육기관은 대학 및 대학원으로 제한하고, 전문직에 대한 개념도 2급정사서 이상으로 하되 사서자격의 취득은 국가사서자격고시제도를 도입·운영함이 사서직 자질향상을 위해서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 사서직 직급조정 및 처우개선 : 도서관업무는 방대한 자료의 조사, 수집, 분석, 정리, 제공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업무 뿐아니라 앞으로는 기획, 조정, 분석 등 고도의 전문적지식과 기술 및 계속적인 연구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룰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무원 사서직렬을 행정직군에서 분리, 정보관리 직군으로 독립시킴과 아울러 상한직급을 국가공무원은 1급까지, 지방공무원은 2급까지로 상향조정하거나 연구직에 편입시키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현행 사서직수당은 연구직 공무원의 수준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사서직의 임용을 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임용시험에는 자격구분에 의한 제한을 등과 더불어 하위직급 시험에도 반드시 문헌정보학 과목을 지정하여야 할것입니다.

(9) 도서관의 전국적배치 : 앞으로의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도시와 농촌 어디에 살든지, 또 어떤 자료를 원하든지, 자유롭고 공평하게 인류공유의 재산인 지식·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문화적생활을 향유할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알맞는 적정규모의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문화부의 도서관백서에 의하면 1992년말까지 전국의 시·군·구에는 한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그리고 1996년까지는 현재의 238개관에서 418개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정보센터로서, 그리고 종합적 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려면 적어도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추창하던 1시·군·구 1도서관의 목표는 이제 1읍·면 1도서관의 목표로 발

전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도서관봉사의 거점을 정·촌(우리의 읍·면)으로 생각하고 그 봉사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읍·면 도서관이라고 했을때 그 도서관 모두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도서관봉사는 어느정도 자생력을 가진 적정규모의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갖는 성질상 그 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집행에 있어서는 적절한 수단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라면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도서관, 문화원도서관, 마을회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시설을 겸용한다든지 분관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든지 달리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동도서관 또는 순회문고를 방방곡곡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는 수단은 다르더라도 기본적목표인 '모든 주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다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 공공도서관 운영체제의 일원화 : 이 문제와 도서관 재원문제는 뒤에 공공도서관분과에서 거론될것이나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수행을 위해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거듭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도서관행정이 문화부로 이관은 되었으나 전국 223개 공립공공도서관 중 겨우 17.5%에 불과한 내무부소관의 39개 도서관만이 문화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을뿐 무려 82.5%에 해당되는 184개관은 교육부 산하에 그대로 둬으로써 문화부는 이들에 대하여 행정적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술적, 지원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행정의 이원적 운영체제하에서는 국가정책의 바람직한 수행은 기대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더욱 슬프게하는것은 문화부에서 밝힌 도서관백서에는 이에 대한 방향설정과 계획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운영체제의 일원화

란 모순을 해소시키지 못한 이유로서 정부당국은 재산이관 절차상의 문제, 이관되는 도서관운영비의 문화부 부담문제, 직원의 소속변경으로 인한 신분상의 변동문제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일원화라는 대원칙에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이관에 부수되는 마찰과 번거로움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는 차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편의주의적 행정의 소산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대원칙과 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된 이상 부수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마땅히 극복하여 조속히 공공도서관 행정의 일원화를 이루어야 할것입니다.

(11) 도서관재원의 안정적확보와 합리적 배분운영 : 도서관이 각종 정보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여 효율적으로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적·교육적·문화적활동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확보된 총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종별로 도서관예산에 관한 예산항목별 편성 배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어느 한 부분만이 도서관을 이용할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입관료와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지역사회 모든 주민의 문화공간이자 지식·정보의 센터로 변모한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국민 누구든지 자유로이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그 설립 및 운영비는 마땅히 공비에서 부담하여야 할뿐 아니라 그 부담액 또한 적정규모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진흥법에서는 이러한 운영비를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87년의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운영비 일반회계 부담원칙」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데다가 지방재정의 취약성 및 불균등과 변화무쌍한 우리의 정치풍토를 고려할때 미래지향적 도서관기능을 계획있게 다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알 권리와 문화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미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도서관세를 신설하여 지

방세인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책정, 도서관예산으로 할애하는 정책이 필요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국고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치등 다양한 재원 확보책을 국가는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공공도서관은 그 운영비의 80% 이상을 학생들의 수업료에 대부분 의존하여 온 점을 고려한다면 국고보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할 경우 영국처럼 일반보조금(우리의 지방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식과 미국처럼 직접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자금의 용도가 분명하고 또 보조대상사업의 계획입안에 자치단체의 주체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12) 도서관발전을 위한 각종 관련법규의 신속한 정비: 정책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분명하여야 되지만은 아무리 목표가 훌륭하고 분명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집행수단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상호 충돌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진흥법이 국가의 도서관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면 이에 상응하도록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법령의 제정, 개폐)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법령으로는 공공도서관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을 학교도서관 분야에 있어서 교육법 및 동 시행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주임교사임용규정,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중 도서관조항의 도서관진흥법에의 통합, 학교도서관법 제정 등을, 대학도서관 분야에 있어서 대학설치기준령중 도서관조항의 도서관진흥법에의 통합, 서울대학교설치령, 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국원대학교설치령, 공무원수당규정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이상 새로운 시대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긴요한 과제라고 나름대로 생각되는 것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① 각종·도

서관의 시설·자료·직원의 확충 ② 각종 도서관의 기준의 상향조정 ③ 국립도서관의 기구 및 기능 강화 ④ 분야별 국립 전문도서관의 설립 ⑤ 납본업무와 저작권 등록업무의 일원화 ⑥ 보존도서관의 설립 ⑦ 학생도서관의 징수 ⑧ 독서지도의 교육과정화 ⑨ 공공도서관의 전 일제 운영 등등 무수히 해결할 과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들과제들은 다음의 주제 발표자님들이 관중별로 관련사항을 논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께 미루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처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보전달의 기수로서 자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한편 많은 불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상에서의 불만은 전진하기 위한 불가결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을 가진, 교육된 시민이야말로 민주과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우리 도서관인들은 정부가 아무리 우리를 의면하더라도 이러한 민주시민의 창출을 위해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인 여러분 언제나 법률에 있는것은 최저의 것입니다. 선구적인 도서관인들은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실행하여 왔으며 법률은 그 뒤에서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누군가는 '도서관의 실태는 도서관의 법제화에 선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해서 법규에 규정된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전문직이라는 이름에 맞지를 않습니다. 손을 더럽히지 않고 나무의 성장을 즐길수는 없습니다. 흙을 파헤쳐 나무를 심지 않으면 숲을 볼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적어도 도서관진흥법에서 담고 있는 목표를 상징화하지 않고 그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며 또 우리 도서관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때 우리가 바라보는 나무와 숲을 무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